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046호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 | | | |
|---------------|-----------------------------|-------------|---|
| ○ 공 고 제 346 호 | 2025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모집 공고 | 식 품 위 생 과 | 2 |
| ○ 공 고 제 350 호 |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통지서 발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자 동 차 관 리 과 | 8 |

회 관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5-346호

2025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모집 공고

식품위생관리 기능을 보강하고 식품안전감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확산을 유도하고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2. 18.

남 동 구 청 장

□ 모집대상 자격요건

○ 모집인원 : 2명

○ 응시연령 : 만 65세 미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내실화를 위한 권장 기준 연령)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남동구 거주자

○ 자격기준

① 소비자기본법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2025년 3월 중 신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예정)

③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6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

하고 있는 자격에 해당하는 자

1. 위생사, 식품제조기사(식품기술사·식품기사·식품산업기사·수산제조기술사·수산제조기사 및 수산제조산업기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영양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학·한의학·약학·한약학·수의학·축산학·축산가공학·수산제조학·농산제조학·농화학·화학·화학공학·식품가공학·식품화학·식품제조학·식품공학·식품과학·식품영양학·위생학·발효공학·미생물학·조리학·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거나 제2호와 같은 과정을 졸업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4.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
- 유통 중인 식품등이 표시·광고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자료제공
-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 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 지원
-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이행 여부 확인 지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모집 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모집공고	2. 19.~ 3. 4.(14일간)	구 홈페이지	
원서접수	2. 19.~ 3. 4.(14일간)	남동구 식품위생과 (남동구보건소 4층)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면접심사	3. 11.(화) 16:00~18:00	남동구보건소 4층 회의실	
합격자발표	3. 14.(금)		개별 유선통보
위촉식	3. 25.(화) 16:00~18:00	남동구보건소 4층 회의실	

□ 운 영

- 위촉(활동)기간 : 2년(2025. 3. 25. ~ 2027. 3. 24.)
- 활동범위 : 남동구 관내
단,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 활동 가능
- 활동수당 : 1일 50,000원 (연간 100일 범위내 지급)

☐ 구비서류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추천서 또는 신청서 1부[서식 1,2]
- 자격·면허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자)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본인)[서식 3]
- 가족관계증명서 1부(본인 및 가족의 식품위생영업 종사여부 확인용)

☐ 모집제외자

- 모집공고일 현재 타 시·도(시·군·구) 및 남동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자
- 식품위생법령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족 포함)

☐ 원서접수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보건소 4층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모집 후에라도 그 결정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응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동구청 식품위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2-453-2755)

[서식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추천서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전공,경력	전공내용		⑤전화번호	자택:
	경 력	○○단체에서 ○○년 활동		직장:
⑥ 직 업			⑦ 직장명	
⑧ 추천기관				
위 사람을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소속 성명 (인) 남동구청장 귀하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5-350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및 제34조(자동차의 튜닝)를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 등의 확보를 위하여 개선명령을 시행하고 등기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2. 19.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대 상 : 자동차관리법위반 대상자 1인 (별첨)

2. 공 고 기 간 : 2025. 2. 19. ~ 2025. 3. 7.

3. 공시송달 내용

상기와 같이 귀하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개선명령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공고기간 게시기간 내에 원상복구 및 개선명령 미 이행시 과태료 처분절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의거하여 고발 등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5. 위 공시송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 (☎ 032-453-28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원상복구 명령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내역

순번	차량번호	성명	반송일자	위반항목	우편 번호	주소
1	211로2039	최*성	2024.12.16. / 2025.01.21.	제34조 위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번길 **, *동 ***호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번길 **, ***호